

VR간호교육연구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VR간호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 연구를 통하여 간호학문과 융합형 미래교육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인력, 기술, 시설 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VR 간호교육 및 융합형 미래교육 연구를 위한 R&D, 컨설팅, 교육 및 관련 사업
2. VR 간호교육 및 융합형 미래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교류 및 네트워킹
3. 기타 VR 간호교육 및 융합형 미래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제4조(소재지) 연구소는 본 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연구소의 구성) 연구소는 3개의 분과와 1개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제6조(분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1. 간호교육 분과는 VR 간호교육 및 융합형 미래교육 연구를 위한 간호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간호학 자문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2. R&D 분과는 VR 간호교육 및 융합형 미래교육의 최신 기술을 연구하고, R&D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3. 미래인재 분과는 VR 간호교육 및 융합형 미래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자문, 교육학 연구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감사,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
 -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 3. 연구소의 규정 개정 및 폐지
 - 4. 연구원의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소장 1인
- 2. 감사 1인
- 3. 각 분과별 위원장 1인

제9조(소장)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고문 및 자문위원) 연구소에 감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감사, 고문 및 자문위원은 국내외의 저명한 학계 및 산업계 인사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11조(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 선임연구원 및 상임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연구원은 본 대학교 및 공동연구대학의 학부생(연구보조원), 대학원생(학생연구원) 및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3장 재 정

제13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원은 제3조의 사업에 의한 수익금, 교비 지원금, 각종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② 연구소의 세출은 운영비, 연구용 기자재 구입 및 계획 연구비 등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

시 1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산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4장 기 타

제15조(해산) ①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소를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제16조(운영세칙)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